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4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<2024년도 주요 변경 예정사항>

○ 제1차 필기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(2024년도 자격시험부터 적용)

교시	과목 구분	시험과목	입실 시간	시험시간	문항수	
1	필수	① 노동법(1) ② 노동법(2) ③ 민 법 ④ 사회보험법	09:00	09:30~11:35 (125분)	과목별 25문항	
	선택	⑤ 경제학원론, 경영학개론 중 1과목		(1232)	23 2 0	

	교 시	과목 구분	시험과목	입실 시간	시험시간	문항수
	1	필수	① 노동법(1) ② 노동법(2)	09:00	09:30~10:50 (80분)	- E
			③ 민 법 ④ 사회보험법	11:10	11:20~13:20	과목별 40문항
	2	선택	[5] 경제학원론, 경영학개론 중 1과목		(120분)	

1. 최소합격인원

○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: 300명

2.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

구분	원서접수기간 (2·3차 시험 동시접수)	시험장소	시행지역	시험일자	합격자발표				
 제1차 시 험	'23. 3. 27.(월) 09:00 ~ 3. 31.(금) 18:00	원서접수 시	서울, 부산,	'23. 5. 27.(토)	'23. 6. 28.(수)				
제2차 시 험	'23. 7. 17.(월) 09:00 ~	수험자 직접선택	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	'23. 9. 9.(토) ~ 9. 10.(일)	'23. 11. 22.(수)				
제3차 시 험	7. 21.(금) 18:00	'23. 12. 1.(금) 큐넷 공지예정	서울	'23. 12. 8.(금)	'23. 12. 27.(수)				
공인어학	성적표 제출기간(온라인다이렉	트 제출은 상시 가 능)	'23. 3. 20.	(월) 09:00 ~ 3.	31.(금) 17:00				
제 1 차	아 시험 일부 과목 면제/	너류 제출기간	'23. 3. 22.(수) 09:00 ~ 3. 31.(금) 17:00						

제1차 시험 전 괴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123. 7. 13.(목) 09:00 ~ 7. 21.(금) 17:00

- ※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[단, 원서접수 마감일은 18:00까지 접수 가능]하며,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
- *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21. 1. 1. 이후 실시되고 2023. 3. 31.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임(어학성적 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9쪽 7. 공인어학성적 기준 참조)

3.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

가. 시험과목(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)

구분	시	험과목[배점]	출 제 범 위
	필수 과목 (5)	① 노동법(1) [100점]	「근로기준법」,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「산업안전보건법」,「직업안 정법」,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최저 임금법」,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,「임금채권보장법」,「근로복 지기본법」,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
제 1 차		② 노동법(2) [100점]	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,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」, 「노동위원회법」,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」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시험 (6과목)		③ 민법[100점]	총칙편, 채권편
(0平号)		④ 사회보험법 [100점]	「사회보장기본법」,「고용보험법」,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「국민연금법」,「국민건강보험법」,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		5 영어	※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
	선택 과목 (1)	6 경제학원론· 경영학개론 중 1괴목100점	

※ 노동법(1) 또는 노동법(2)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

구분	시	험과목[배점]	출 제 범 위
	필수 과목	① 노동법 [150점]	「근로기준법」,「피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「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「산업안전보건법」,「산업재 해보상보험법」,「고용보험법」,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」,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,「노동위원회법」,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,「교원의 노 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제2차 시험	(3)	② 인사노무관리론 [100점]	
(4과목)		③ 행정쟁송법 [100점]	「행정심판법」및「행정소송법」과「민사소송법」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
	선택 과목 (1)	④ 경영조직론, 노동경제학, 민사소송법 중 1과목 [100점]	
제3차 시험	면 접 시 험		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

※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

- ※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"시험시행일"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.
- ※ 기활용된 문제, 기출문제 등도 변형·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

나. 과목별 시험시간

구분	시행일자	교시	시 험 과 목	입실시간	시 험 시 간	문항수
제 1 차 시 험	5. 27.(토)	-	1노동법(1)2노동법(2)3민 법4사회보험법5경제학원론,경영학개론 중 1과목	09:00	09:30 ~ 11:35 (125분)	과목별 25문항
		1	① 노동법	09:00	09:30 ~ 10:45 (75분)	4문항
	9. 9.(토)	2		11:05	11:15 [~] 12:30 (75분)	
제2차 시 험		3	② 인사노무관리론	13:30	13:50 ~ 15:30 (100분)	
		1	③ 행정쟁송법	09:00	09:30 ~ 11:10 (100분)	과목별 3문항
	9. 10.(일)	2	④ 경영조직론, 노동경제학, 민사소송법 중 1과목	11:30	11:40 ~ 13:20 (100분)) L 0
제3차 시 험	12. 8.(금)	_	「공인노무사법」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	_	1인당 10분내외	_

※ 제3차 시험장소 등은 2023. 12. 1.(금) 09:00 Q-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고

4.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
가. 응시자격(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)

-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

나. 결격사유(공인노무사법 제4조)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.
 - 1. 미성년자
 -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3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

- 4.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8.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
- ※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(2023. 12. 27.) 기준임

5. 합격자 결정

○ 제1차시험

-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- "각 과목 40점 이상"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, "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"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
- 제1차 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(규칙 제4조의2제1항)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.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함
 - 1. {(응시자의 점수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) ÷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× 10} +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

2 ((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-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)²의 총합계 ÷ (응사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- 1)} 의 거듭제곱근

○ 제2차시험

- 과목당 만점의 40%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- 일부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,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- 다만, 각 과목의 점수가 40%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%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%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
-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.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
-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.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
- "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"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, "총점의 60퍼센트 이상"이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

• 성적의 세부산출방법

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(全) 답안지(시험위원별 답안지)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,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아래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.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.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

- 1. {(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) ÷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× 10} + 50
- 2. {(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)²의 총합계 ÷ (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1)} 의 거듭제곱근
- ※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,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
- 제3차시험
-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"상"(3점), "중"(2점), "하"(1점)로 구분하고,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"중"(8점)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함. 다만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

6. 시험의 일부면제

가. 시험의 일부면제

- 제1차시험 면제 : 2022년 제31회 제1차시험 합격자
-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: 2022년 제31회 제2차시험 합격자

나.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

- 1)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
 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(1) 및 노동법(2) 면제
 - ① 고용노동부(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), 그 소속기관,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

-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「공인노무사법 시행령」 별표1의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(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,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)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
- ③ 조합원 100명 이상인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0조 1항 및 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,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
- ④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
-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 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

2)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
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 면제
 - 고용노동부(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), 그 소속기관,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
 - ①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,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
 - ②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,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
 - ※ 경력산정 기준일: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(2023. 12. 27.)

다.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적용 제외(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5항)

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"제1차시험 일부과목 면제" 및 "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"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
- ②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※ 시행일: 2020. 7. 30.(시행일 이후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과목면제 적용 제외)

< 시험의 일부(과목)면제 해당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>

- 제출기간
- 1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: '23. 3. 22.(수) 09:00 ~ 3. 31.(금) 17:00 (토·일제외)
-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: 7. 13.(목) 09:00 ~ 7. 21.(금) 17:00
- ※ 증빙서류 제출·심사 후에만 시험의 일부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, 증빙서류는 마감일 17:00까지 제출(토·일·공휴일 제외, 등기우편 제출 시 마감일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- 제 출 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소속기관

기 관 명	담당부서	주 소	우편번호	연 락 처
서울지역본부	전문자격시험부	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	02512	02-2137-0558
부산지역본부	필기시험부	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	46519	051-330-1812
대구지역본부	필기시험부	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	42704	053-580-2382
인천지사	필기시험부	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209	21634	032-820-8676
광주지역본부	필기시험부	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	61008	062-970-1761
대전지역본부	필기시험부	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	35000	042-580-9140

- 제출서류 : ① 경력증명서(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서류) ※ 징계사항 미표기 시 인사기록카드 등 별도 서류 추가 제출
 - ② 시험일부면제신청서(공단 소정양식)
- ※ 경력확인 등을 위해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필요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- ※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및 시험일부면제신청서 서식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(http://www.Q-Net.or.kr/site/nomu) → 자료실에 다운로드 활용
- 제출방법 : **방문** 또는 등기우편
-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(단,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
-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**요건 미충족시**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

<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>

- **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**는 1차 또는 2차시험 면제자로 2·3차 원서 접수기간 내(7. 17. ~ 7. 21.)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(별도제출서류는 없음)
-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가 1차시험에 응시를 원할 경우 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 가능 (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23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)

7. 공인어학성적

- 가.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
 - O 기준점수

니침대	TOEIC	TOEFL TEPS		C TELD	FLEX	IEI TC	
시 험 명		PBT	IBT	'18.5.12 이후	G-TELP	(영어)	IELTS
일반응시자	700	530	71	340	65(Level 2)	625	4.5
청각장애인	350	352	-	204	43(Level 2)	375	-

- ※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(구, 2·3급)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. 다만,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
-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 인정하고, 수시·특별 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
- O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국내 어학시험 기관에서 국외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하나,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
 - ※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
- 영어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(단.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)
-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(2023. 3. 31.)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

<영어시험성적표 접수안내>

- 제출기간: 2023. 3. 20.(월) 09:00 ~ 3. 31.(금) 17:00
- ※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후에만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가능
- ※ 등기우편 제출시 마감일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제 출 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소속기관

기 관 명	담당부서	주 소	우편번호	연 락 처
서울지역본부	전문자격시험부	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	02512	02-2137-0558
부산지역본부	필기시험부	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	46519	051-330-1812
대구지역본부	필기시험부	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	42704	053-580-2382
인천지사	필기시험부	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209	21634	032-820-8676
광주지역본부	필기시험부	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	61008	062-970-1761
대전지역본부	필기시험부	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	35000	042-580-9140

- 제출서류: ①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(공단소정양식) ② 영어시험성적표(원본)
 - ③ 성적확인동의서(해당자만 제출)

- ※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제출
- ※「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」 및 「성적확인동의서」는 Q-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
- 제출방법 : 오프라인(방문 또는 등기우편) 또는 온라인(토익, 텝스, 지텔프 시험에 한함)
- ※ 토익, 텝스, 지텔프 시험에 한하여 온라인(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-마이페이지-어학성적 제출 - 하단의 제출하기)으로 상시 제출 가능[공지사항 다이렉트 제출 참조]
- ※ 제출순서 : 큐넷 회원가입 → 영어시험성적표 제출·승인 → 인터넷 원서접수
- ※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23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
- ※ 다른 자격(공단 시행)으로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23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의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없이 영어시험성적표제출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
- ★ 영어시험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·변조하거나 허위 성적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,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

8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

- 제1차시험 : 2023. 3. 27.(월) 09:00 ~ 3. 31.(금) 18:00 [5일간]
- 제2·3차시험 : 2023. 7. 17.(월) 09:00 ~ 7. 21.(금) 18:00 [5일간]
- ※ 제2차・제3차시험 동시접수 (3차시험만 응시 하는 사람도 위 기간 내에 원서 접수 하여야 함)
- ※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,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

나. 접수방법

- O Q-Net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
 - ※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(공단지부・지사)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
 - ※ 단체접수는 불가함
-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파일(JPG·JPEG 파일, 사이즈: 150 X 200 이상, 300DPI 권장, 200KB 이해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접수(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)

다. 수수료 납부

- O 응시수수료
 - 제1차시험 : 30,000원
 - 제2·3차시험 : 45,000원(3차시험 재 응시자 포함)

- 납부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 이용
- ※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,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(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)
- ※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

라. 수수료 환불

- O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: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
-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: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
- 시험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: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
- O 시험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: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
 - ※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(Q-Net)으로만 가능

마. 수험표 교부

- O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
- O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
- O 수험표에는 시험일시, 입실시간, 시험장 위치(교통편), 수험자 유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
 - ※「SMART Q-Finder」도입으로 시험전일 18: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

바. 원서접수 완료 후(결제완료 후) 접수내용 변경 방법

O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,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

사. 수험자 응시편의 제공

-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
 -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
 -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,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, 상지장애로 구분

-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(의료법 제3조의3) 의사진단서 제출(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
-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(소견서 포함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(임산부는 의원급・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,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)
 - ※ 증빙서류 미제출시,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
-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'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'참고
 - ※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<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>

- 1.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- 2.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(불편사항) 등
- 3.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- 4. 진단서 유효기간
- 단,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, 의사진단서에 따름

□ 응시편의 제공 신청 대상 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

참고: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(보건복지부령 제932호)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, 장애 정도로 표현함.

	장이	H유형	필기(답)형 시험	작업형 시험	제출서류
1171710II	중	·증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■시험시간 1.7배 연장	■시험시간 1.5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시각장애	경 심	증(장애의 정도가 하지 않은 장애인)	■시험시간 1.5배 연장	■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뇌병변장애	장	애정도 구분 없음	■시험시간 1.5배 연장	■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상 지	① 중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■시험시간 1.5배 연장	■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② 경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	■시험시간 1.2배 연장	■시험시간 1.2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지체장애	하 지	③ 하지 (정도 구분 없음, <u>척추장애</u> 포함)	■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	■시험시간 1.1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④ 복합장애 [상지+하지]	■ 상지장애와 동일	■① 또는 ②의 정도에 부여한 시간 +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	①,②,③호 중 하나

	장애정도 구분 없음	■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	①,②,③호 중 하나
기타	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	■ 장애의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	
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	장애정도 구분 없음 (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과민성방광증후군, 신장, 심장, 장루·요루 장애 등)	■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-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	<u>(4) </u>

- ※ <u>척추장애</u>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 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
-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

※ 증빙서류

-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(명서) 또는 장애인 복지키드 사본 1부. 다만,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제출
-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 (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) 각 1부.
-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.
-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변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.
 -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(소건셔 불인정, 유효기간 필요) 원본 1부.
- ⑤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간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
- ※ (예시)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
-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(지체장애 상지장애① +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) ⇒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[<u>표준시간(60분) + {(60분)*0.3)=78분]</u> +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[(60분*0.1)=6분] = 84분

아. 면제서류 접수 및 심사

- 제출기간
-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: 3. 22.(수) 09:00 ~ 3. 31.(금) 17:00
-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: 7. 13.(목) 09.00 ~ 7. 21.(금) 17:00
- O 제출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[토·일·공휴일 제외]
- O 제출기관 : 공단 6개 소속기관
- O 제출서류
 - ① 시험 일부면제신청서(공단소정양식) 1부
 - ② 경력증명서(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서류) 1부

- ③ 징계유무 확인 서류(인사기록카드,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)
- ※ 경력확인 등을 위해 국민연금가입자납입증명서 등을 필요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- ※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서식은 Q-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→고객만족→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활용
- 경력산정의 기준일 :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(2023, 12, 27.)
 - ※ 응시자격 기간계산은 노동부 근기68200-157(2003. 2. 8)에 따라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함
- O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

<제3차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공고 안내>

■ 제3차 시험일시 및 시험 장소는 2023. 12. 1.(금) 「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」에 공고

9.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

- 가. 기간 : <u>'23. 5. 27.(토) 14:00 ~ 6. 2.(금) 18:00</u> <7일간>
- 나. 공개 및 접수방법 : Q-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
 - ※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,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
 - ※ 시험문제지는 시행 후 수험자에게 지급

10.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

가. 합격자 발표

- 제1차시험 : 2023. 6. 28.(수) 09:00
 - 발표내용 : 개인별 합.불 여부,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
 - ※ 선택과목은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(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)
- 제2차시험 : 2023. 11. 22.(**수**) 09:00
 - 발표내용 : 개인별 합.불 여부,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
 - ※ 전과목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(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)
- 제3차시험 : 2023. 12. 27.(**수**) 09:00
 - 발표내용 : 개인별 합.불 여부, 득점 공개

O 발표방법

- Q-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: 60일간
- 자동안내전화(ARS) : 1666-0100, 4일간 (개인별 합·불 여부만 안내)

나.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

- O 신청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- O 신청방법 : Q-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

다. 자격증 발급

○ **자격증 발급기관** : 한국공인노무사회 (02-6293-6112)

11. 수험자 유의사항

【 제1·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】

- 1.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·위조·기재오기·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.
 - ※ Q-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
 - ※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
- 2.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(단,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),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, 수험표,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.
 - ※ 매 교시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
 - ※ 수험자 입실 완료 시각 20분 전 교실별 좌석 배치도 부착
 - ※ 신분증인정범위:
 - (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) 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(유효기간이내인 것) 및 정부24·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), ② 운전면허증(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,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,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, ④ 여권, ⑤ 공무원증(장교・부사관・군무원신분증 포함), ⑥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, ① 국가유공자증, ⑧ 국가기술자격증*(정부24, 카카오,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포함) *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,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(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
 - (초·중·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) ①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증(사진・생년월일・성명・학교장 직인이 표기・날인된 것), ② NEIS 재학증명서(사진(컬러)・생년월일・성명・학교장 직인이 표기・날인되고,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)
 -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, ④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,
 - ⑤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 - (미취학 아동)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"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", ② 국가 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 - (사병(군인))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
 - (외국인) ① 외국인등록증.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. ③ 영주증
 - ※ 신분증(증명서)에는 사진, 성명, 주민번호(생년월일),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(없는 경우 불인정)
 - ※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, 녹화·촬영본,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
 - ※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 응시 불가
 - ※ 시험 전일 18:00부터 공인노무사 홈페이지(큐넷)[마이페이지 진행 중인 접수 내역]에서 시험실을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- 4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.
 - ※ '시험 포기 각서'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(차)시 재입실·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 처리
 - ※ 단, 설사/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, 해당 교시 재입실 이 불가하고,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
- 5. 결시 또는 기권,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6.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계속 답안카드(답안지)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**무효처리**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7.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<u>당해 시험을 무효</u>로 하고, 그 처분일로부터 <u>5년간 시험에</u>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8.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**손목시계를 준비** 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, **스마트워치** 등 전자·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- ※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,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 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
 - ※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,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
- 9.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<u>수험자 본인이</u> 반드시 메모리(SD카드 포함)를 제거, 삭제(리셋, 초기화)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. 메모리(SD카드 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 - ※ 단. 메모리(SD카드 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
 - ※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 (초기화 이후 세팅) 방법숙지
- 10.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[휴대용 전화기,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 카메라, 음성파일 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, 스마트워치 등]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, 금속(전파)탐자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(퇴실) 및 무효(0점)

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.

- ※ 전자·통신기기(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)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
- ※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
- 11.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,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12.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,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- 13.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14. 접수 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규정 이외에는 환불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15. 기타 시험 일정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의 시행공 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.
- 16. 응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공인노무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"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"을 확 인하여 주기 바랍니다.
 - ※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 편의 제공 대상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 (응시 편의 제공 불가)

【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】

- 1. 답안카드에 기재된 <u>'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</u>'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- 2.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(유의사항)에 따라 답안 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,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.
- 3.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 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.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 제번호와 **동일한 번호에 마킹**하여야 합니다.
 - ※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
- 4. 답안카드 기재·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 - ※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

- 5.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(검은색 사인펜 미사용) 수험자의 부주의(답안카드 기재·마킹 착오, 불완전한 마킹·수정, 예비마킹, 형별 마킹 착오 등)로 판독불능,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
 - ※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,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(단, 답안 이외 수 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 불가)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
 - ※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

【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】

- 1.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<u>'답안지 작성 시 유의</u> 사항'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- 2. 수험자 인적사항·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**검은색 필기구만 사용** 하여야 합니다.(그 외 연필류, 유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**답항은**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)
 - ※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
 - ※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
- 3.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, 답안지 전체를 채점 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.
- 4.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(=)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며,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【 제3차 시험 면접 수험자 유의사항 】

- 1.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는 2023. 12. 1.(금) 공인노무사시험 홈페이지 (www.Q-Net.or.kr/site/nomu)에 공고합니다.
- 2. 수험자는 일시·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 - ※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
- 3. 소속회사 근무복, 군복, 교복 등 제복(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) 을 착용해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- ★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엄정.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,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(http://www.Q-Net.or.kr/site/nomu)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(☎1644-800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1】 노동관계법령의 범위(「공인노무사법 시행령」제2조 관련)

노동관계법령의 범위

- 1. 「근로기준법」
- 2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- 3. 「최저임금법」
- 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
- 5.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6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- 7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
- 8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
- 9. 「노동위원회법」
- 10.「직업안정법」
- 11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- 12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
- 13. 「숙련기술장려법」
- 14. 「근로복지기본법」
- 15. 삭제〈2010.12.7〉
- 16.「고용정책기본법」
- 17. 「고용보험법」
- 18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19. 「선원법」
- 20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
- 21.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22. 「임금채권 보장법」
- 23.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- 24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- 25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- 26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- 27.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
- 28.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
- 29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30.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
- 31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(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관계사건만 해당한다)
- 32. 「공무원연금법」(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8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)
- 33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(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)
- 34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- 35.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36.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」
- 37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)
- 38.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
- 39.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38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 법령